##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동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42 발의연월일: 2024. 9. 11.

발 의 자: 김동아・이기헌・황정아

민병덕 · 송재봉 · 서영교

이정문・김문수・조 국

백승아 · 김성환 · 김준혁

이재강 • 이언주 의원

(14위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대규모점포등의 입지 선정과 건축단계 이후 등록단계에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과 관련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, 개설 이후 제출했던 지역협력을 미이행하는 등 지역상권과 갈등이 발생해도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조치근거 미비로 사실상 지역상권 붕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

도록 하고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도를 합리 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상권 붕괴로부터 보호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 인접 지역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접 지역에도 제출하도록 함(안 제8조제5항).
- 나. 지역협력계획서의 공간적 작성 범위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범위와 동일하며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에 속하여 있는경우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햐 함(안 제8조제8항 신설).
- 다.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시 대상 업종은 해당 대규모점포등에 입점이 계획된 업종을 포함하며, 지역협력계획서는 상생협력, 고용활성화 등을 포함해야 하며 그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해 공표함(안 제8조의2제1항, 제2항 및 제5항 신설).
- 라. 상권영향평가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산업통산 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대행하도록 함(안 제8조의4 신설).
- 마.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등록한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등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직 권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의2 신설).

바. 상권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했거나 이를 보관하지 아니했을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2조제3항제1 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후단 중 "범위는"을 "범위와 매장면적의 산정기준은"으로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"지구를 말한다"를 "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·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"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을 "시장"으로 한다.

제8조제5항 중 "인접지역"을 "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상권영향평가서 및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접지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20일"을 "15일"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의견을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그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,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 및 이유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.

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의 공간적 작성 범위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범위와 동일하며 작성 범위 일부가 인접 특 별자치시·시·군·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8조의2의 제목 "(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·점검)"을 "(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작성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1항)중 "포함할 수 있다"를 "포함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중 "점검하고"를 "매년 점검하고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제8조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대상 업종은 해당 대규모 점포등에 입점이 계획된 업종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②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대상의 공간적 범위는 상권 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의 범위와 동일하며 그 범위의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포함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- ⑤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대규모점포등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 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.

제8조의4 및 제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의4(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대행 등)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상권 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(이하 "상권영향평 가기관"이라 한다)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
 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권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상권영향평가기관의 활동 지역 설정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  - ③ 상권영향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1. 상권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
  - 2. 상권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
  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권영향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  - 2.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  - 3.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 - 4.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
  - ⑤ 상권영향평가기관이 업무를 휴업 · 폐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

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⑥ 상권영향평가기관의 지정·지정취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의5(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등록 및 변경등록 준수사항) 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중소유통기업 및 이해관계자에게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이외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중소유통기업 및 이해관계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려는 자에게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이외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(이하 "대규모점포등개설자"라 한다)"를 "대규모점포등개설자"로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대규모점포등의 사실조사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·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제8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.

- ②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 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대규 모점포등개설자에게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한 내용을 정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.
- ③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제2 항에 따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
제13조제1항제2호 중 "대규모점포등을"을 "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전부"로 한다.

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5(금품 제공 등의 금지)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중소유통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② 중소유통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제23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4. 제8조제7항에 따른 전문기관
  - 5. 제8조의4에 따른 상권영향평가기관
- 제44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1.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기관 지정의 취소 제45조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2의2. 제8조제7항에 따른 전문기관
  - 2의3. 제8조의4에 따른 상권영향평가기관
- 제52조제3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1의2. 제8조의4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상권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자
  - 1의3. 제8조의4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상권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매장"이란 상품의 판매와	2
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	
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	
다.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	
용역의 제공 장소의 <u>범위는</u>	범위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매장면적의 산정기준은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7. "상점가"란 일정 범위의 가	7
로(街路) 또는 지하도에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	
도매점포・소매점포 또는 용	
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<u>지구</u>	<u>지구로</u>
<u>를 말한다</u> .	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
	을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
	·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
	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
	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
	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
	이하 같다) • 군수 • 구청장(자

8. ~ 16. (생략)

제7조(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) ①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)는 미리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들어야한다.

- 1. ~ 8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8조(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) ① ~ ④ (생 략)
  - ⑤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·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 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

	<u>치</u> -	구의	구경	성장님	<u>이</u> 르	말	한다.	<u> </u>
	<u>하</u>	같다	() o [	인정	하	는	곳을	말
	한1	<u>구</u> .						
8	3. ∼	16.	(현	행과	같	음)		
제7	'조(	지방	자 <i>치</i>	단체	의	メ	사업.	시 행
Ţ	릉)	1 -						
_								
_								
_								
_								
_					-시	장-		
_						<u> </u>		
_								
_		_						
		•						
1		0 /	/ 됬 됬	ון בו	7L (	5 \		
		8. (		,	包节	ゴノ		
		현행3 미그		_ •	റി	-	ᆒᅺ	드 큰
·	`	대규모	_		·		. –	•
		변경등 、	-독)	(T)	$\sim$	4)	(연	앵꾸
	같음	)						
(,	5) -							
-								

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인접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.

⑥ 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⑦ (생 략) <u><신 설></u>

체다 미구ㅁ저ㅍ
해당 대규모점포
등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
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접지
<u>역</u>
<u></u>
<u>15</u>
일
<u></u>
시 거수 시거수 제호비
<u>이 경우 의견을 제출받</u>
<u>은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</u>
• 구청장은 해당 의견을 검토
하여 그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,
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
이내에 검토 결과 및 이유 등
을 회신하여야 한다.
⑦ (현행과 같음)
<u>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</u>

제8조의2(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제8조의2(상권영향평가서 및 지 및 이행실적 평가·점검) <신 역협력계획서의 작성 등) ① 설> 제8조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

<신 설>

- ①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 서에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, 지역 고용 활성화 등 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- ②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·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

역협력계획서의 공간적 작성 범위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범위와 동일하며 작성 범위 일 부가 인접 특별자치시·시·군 ·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8조의2(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작성 등) ① 제8조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대상 업종은 해당 대구모점포등에 입점이 계획된업종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 서 작성 대상의 공간적 범위는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의 범위와 동일하며 그 범위의 일 부가 인접 특별자치시·시·군 ·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 작성하 여야 한다.

<u>(3)</u>	 				_
	 				_
	 				_
	 <u>丑</u>	함하여	여야	<u>한다</u> .	
<u>4</u>	 				_
	 				_

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<신 설>

<신<u>설></u>

이행실적을 점검하고, 이행실적 -----매년 점검하고-----

<u>⑤</u>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•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권고 를 받은 대규모점포등이 권고 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표할 수 있다.

제8조의4(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대행 등) ① 제8조제1항에 따 라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(이하 "상권영향평가기관"이 라 한다)에게 그 작성을 대행 하게 하여야 한다.
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권 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하려는 경 우 시 ·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상권영향평가기관의 활동 지역 설정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- ③ 상권영향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

다.

- 1. 상권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 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
- 2. 상권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
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권 영향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 다 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- 2.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- 3.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4.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위반한 경우
- ⑤ 상권영향평가기관이 업무를

<신 설>

휴업·폐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⑥ 상권영향평가기관의 지정· 지정취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의5(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등록 및 변경등록 준수사항)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 등록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 의 등록과 관련하여 중소유통 기업 및 이해관계자에게 지역 협력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이 외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 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중소유통기업 및 이해관계 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규 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 경등록 하려는 자에게 대규모 점포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지 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제11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특별 기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<u>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(이하 "대구모점포등과설자"라 한다)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알려야 한다.

1. ~ 4. (생 략) ② (생 략) <신 설>

	이외	의	금품	이나	재신	<u> </u> 산상의	०]
	익을	<u>.</u> 요	구하	거나	받ㅇ	<u> </u>	아
	니 :	된다	<u>•</u>				
시	11조	:(등	록의	취소	등)	1	
				- <u>대규</u>	모점	포등기	<u>  </u>
	<u> 자</u>						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2(대규모점포등의 사실 조사 등) ① 특별자치시장・시 장・군수・구청장은 대규모점 포등개설자가 제8조에 따른 변 경등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

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
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
조사를 통하여 대규모점포등개
설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
하였거나 등록한 내용이 사실
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
기간을 정하여 대규모점포등개
설자에게 변경등록을 하거나
등록한 내용을 정정하도록 명
령할 수 있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·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개설 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직권으로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규모점포 등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④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 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난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
- 제13조(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 저 위승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.
  - 1. (생략)
  - 2.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<u>대규</u> 2. -----<u>대규</u> 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
  - 3. (생략)
  - ② (생략)

<신 설>

네13조(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	지
위승계) ①	
<u>.</u>	

- 1. (현행과 같음)
- 모점포등의 영업을 전부----
  - 3. (현행과 같음)
  - 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의5(금품 제공 등의 금지)

-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 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는 중소유통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 게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 련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중소유통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제8조제1항에 따 라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에 게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

- 제23조(유통전문인력의 양성) ① / (생 략)
 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 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 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~ 3. (생략)

<u><신</u>설>

<신 설>

- ③ ~ ⑥ (생 략)
- 제44조(청문) 산업통상자원부장 저 관,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・시장・군수・구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<u><신 설></u>

<u>1.</u> (생 략)

2. ~ 7. (생략)

련하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
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
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.
제23조(유통전문인력의 양성) ①
(현행과 같음)
②
<u>.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8조제7항에 따른 전문기관
5. 제8조의4에 따른 상권영향평
<u>가기관</u>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44조(청문)
1.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상권
영향평가기관 지정의 취소
<u>1의2.</u> (현행 제1호와 같음)
2. ~ 7. (현행과 같음)

### 제45조(보고) ① (생 략)
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- 1.·2. (생략) <신 설>

## <u><신</u> 설>

## 3. (생략)

- 제5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.
  - ② (생 략)
 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(생략)

<신 설>

제45조(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
2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2의2. 제8조제7항에 따른 전문
<u>기관</u>
<u>2</u> 의3. 제8조의4에 따른 상권영
<u>향평가기관</u>
3. (현행과 같음)
제52조(과태료) ①
· ② (현행과 같음)
③
<b>3</b>
1 /귀되기 기수)
1. (현행과 같음)
<u>1의2. 제8조의4제3항제1호를 위</u>
반하여 상권영향평가서와 그

	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
	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
	<u>한 자</u>
<u> &lt;신 설&gt;</u>	1의3. 제8조의4제3항제2호를 위
	반하여 상권영향평가서와 그
	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
	보존하지 아니한 자
2. ~ 2의9. (생 략)	2. ~ 2의9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